<table>
<tr><td colspan="2">사건명</td><td colspan="4">In re Claude Nouvel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소의 종류</td><td colspan="2">특허등록거절 항소</td><td>권리별</td><td>특허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원고</td><td colspan="4">(항소인) Claude Nouvel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피고</td><td colspan="4">(피항소인) U.S.PTO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권리사항</td><td colspan="4">U.S.P.A. RE 11/785,758 (출원일 : 2007.04.19)
“Transversely retained multiple slip-joint pliers"
원등록 U.S.P. 6,880,434 (등록일: 2005.04.19 출원일: 2003.01.14)
"Transversely retained multiple slip-joint pliers"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원심</td><td>법원</td><td rowspan="2">BPAI (특허청 심판원)</td><td>사건번호</td><td colspan="2">11/785,758</td></tr>
<tr><td>소송일</td><td colspan="2">2011.00.00.</td></tr>
<tr><td>판결</td><td colspan="4">재등록 일부 청구항(1-19항) 거절</td></tr>
<tr><td>요지</td><td colspan="4">BPAI는 재등록 신청의 일부 청구항은 2건의 선행특허로부터 자명하므로, 통상의 기술자로부터 일반적 상식(common sense)에서 자명하다고 하고 등록을 거절하였다.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항소심</td><td>법원</td><td>CAFC</td><td>판례분석</td><td colspan="2">□ / □</td></tr>
<tr><td>사건번호</td><td>No. 11-1526</td><td>판결일</td><td colspan="2">2012.08.29.</td></tr>
<tr><td>판결</td><td colspan="4">원심 파기 및 재심리 명령</td></tr>
<tr><td>요지</td><td colspan="4">CAFC는, 원심이 자명성 판단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‘일반적 상식’에 근거하고 있으나, 일반적 상식이 왜 자명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뒷받침하는 논리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, 또한 선행특허가 이를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,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하였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비고</td><td colspan="4">이 특허출원은 ‘434특허의 재등록 출원으로 청구항으로 11-26항을 추가하고 있다.
심사관은 첫 번째 OA에서 1-10항은 등록가능하고, 11-12항은 거절예고 하였으며, 이에 출원인은 11-12항을 보정하였다. 두 번째 심사관의 OA에서는 1-13항 모두 선행특허에서 가르침과 암시 및 동기를 제공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 상식으로써 자명하다고 거절하였다. 이에 대하여 BPAI는 특별한 부가적 설명 없이 심사관의 거절을 확정하였고,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.</td></tr>
</table>

(C) Oneness Co., Ltd. 2012.10.02.